

전주지방법원 2021. 10. 26 선고 2020가단23655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담당변호사 진현덕

피 고 1. 주식회사 A
2. B
3. C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
4. D
5. E

변 론 종 결 2021. 9. 28.
판 결 선 고 2021. 10. 26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,474,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8. 20.부터 2020. 12. 9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20. 4. 2. 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20.

4. 6. 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,

나. (1) 피고 D은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. 4. 2. 접수 제14854호로 마친, (2) 피고 E은 같은 등기소 2020. 4. 6. 접수 제152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, B, D,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‘피고 회사’라고 한다)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28. 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C는 원고에게 3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

(1) 원고는 2012. 8. 17. 피고 회사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80,000,000원, 보증기한 2020. 10. 26., 대위변제시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고,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(2) 피고 회사는 2020. 5. 28.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고, 원고는 위 보증사고를 통지받고 2020. 8. 20. F은행에게 77,474,7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(3)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연체이율은 2019. 4. 1. 이후 연 8%이다.

나. 피고 회사의 매매계약

(1) 피고 회사는 2020. 4. 28.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(이 사건 아파트'라고 한다)를 대금 53,000,000원에 매도하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 2020. 4. 29.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(2)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채권최고액 32,500,000원)가 2020. 4. 29.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.

다. 피고 B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

(1) 피고 B은 2020. 4. 2.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,000,000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485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(2) 또한 피고 B은 2020. 4. 6.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,500,000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22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재산상태 등

(1)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(가액 48,000,000원)와 (차량번호 1 생략) 차량(가액 미상)을 보유한 반면, 이 사건 구상금채무(원금 77,474,773원)와 G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(2,000만원)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2020. 4. 28. 당시 채무초과상태이다.

(2)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(가액 2020. 4. 2. 당시 49,185,500원, 2020. 4. 6. 당시 49,293,600원)를 유일한 재산으로 보유한 반면 이 사건 구상금채무(원금 77,474,773원), H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(2,000만원), 보증채무(대출금 5,400만원, 신용카드대금 2,400만원), G조합에

대한 대출금채무(1,000만원), 피고 D(약 2,500만원)과 피고 E(2,500만원)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2020. 4. 2. 및 2020. 4. 6. 당시 채무초과상태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익산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, H은행, G조합에 대한 각

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77,474,77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. 8. 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20. 12. 9.까지 약정이율인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37,000,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친구인 J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아 2020. 1. 26.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5,3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, 계약 당일 1,000만원, 2020. 3. 24. 중도금 1,100만원, 2020. 4. 28. 잔금 3,2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,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,000만원, 2020. 3. 24. 중도금 1,100만원, 2020. 4. 28. 2,000만원, 2020. 4. 29.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각 경료받았고, 2020. 5. 8. 400만원, 2020. 5. 12. 300만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

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 및 피고 C와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는 알던 사이가 아닌 점,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액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보다 낮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,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된다.

다. 소결

피고 C가 약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피고 D,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B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, 피고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, 피고 B이 피고 D과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 D, E의 약의가 각 추정되며, 이는 피고 D, E이 피고 B에 대하여 실제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.

따라서 피고 B과 피고 D, E 사이에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, 피고 D, E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, D,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재광

목 록

1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익산시 K에 있는 L아파트

[도로명주소] 익산시 M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익산시 K 대 3808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4층 N호 철근콘크리트조 58.92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3808분의 28.96

2. 익산시 O 전 998㎡

3. 익산시 P 전 83㎡, 끝.

